

◎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60호
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내촌IC 인근)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 번호	④ 노선명	⑤ 위치	⑥ 면적	⑦ 기점	⑧ 종점	⑨ 주요 통과지	⑩ 총연장 (km)
변경 (해제)	고속 국도	제60호	서울양양선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-2	155㎡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-2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-2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	-
변경 (지정)	고속 국도	제60호	서울양양선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-5	108㎡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-5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-5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	

2. 도시계획시설(시설:광장) 결정(변경) 내용 : 해당없음

3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:

- 도로구역 지정 오류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

4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: 해당없음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해당없음

6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가. 열람장소

-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

(주소 :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873, 전화번호 : 033-811-6113)

나. 열람기간 :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

7.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

연번	노선명	소재지	변경사항	비고
1	서울양양선 (고속국도 제60호)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-2	도로구역 변경(해제)	
2	서울양양선 (고속국도 제60호)	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-5	도로구역 변경(지정)	

8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
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가능.

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,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.